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담당: 참여연대 이선미 간사 02-725-7104, aimns@pspd.org)
제 목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발의
날 짜 2011. 12. 19. (총 25 쪽)

보 도 자 료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유권자 자유법> 입법 발의 **93조 1항 폐지,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등 총선 전에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해야** **12/21, 개정안 토론회 이후 본격적 공론화 입법화에 나설 것**

1. 2012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지난 목요일(12/15), 국회에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SNS에서 투표독려 행위 등을 비롯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 행위에 대한 단속과 비판 여론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경기 군포시, 3선)은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와의 법안개정 협의를 거쳐 일명 <유권자 자유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유자넷은 선거법 주요 독소조항에 대한 종합적 대안을 담은 <유권자 자유법>의 발의를 환영하며, 이 법안이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여 주권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2. <유권자 자유법>은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의 의사 표현, 정책캠페인, 투표 독려 캠페인 등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제약했던 공직선거법의 주요 독소조항 17개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 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제59조), △선거운동 정의의 명확화 및 예외 조항(정책운동) 신설(제58조), △포괄적인 후보자 정당 비판 금지 규정 폐지(제93조제1항), △인터넷 실명제 폐지(제82조의6), △정책캠페인 규제 약용 조항 개정(제90조, 제101조, 제103조), △후보자 비방죄 폐지(제82조의 4, 제110조, 제251조), △투표 독려 행위 규제 조항 개정(제230조) 등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투표를 통해 발현되는 통로를 확대하기 위해 △투표마감 시간 오후 9시로 연장(제155조),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제148조) 등 투표권 확대 방안을 담고 있다.
3. 이에 앞서 5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자넷은 지난 10월 12일, “구시대적 선거법과 성숙한 유권자 사이의 간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르렀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없이 공정한 선거, 정책 선거는 불가능하다”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한 바 있다. 오늘 <유권자 자유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은 당시 청원안 소개의원으로서 참여하였으며, 이후 유자넷 정책위원회와 토론회 협의를 거쳐 청원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보완하여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4. 최근 SNS에서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에 심각한 위축을 느끼고 있다. 정보교환과 소통의 통로가 되고 있는 SNS 기능을 등한시하고 현행 선거법의 규제 조항을 유지한다면, 다가오는 총□대선에서 유권자의 혼란과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며 정책선거는 물론이고 투표독려조차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신속히 착수해야 하며, 국회는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현행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반드시 총선 전에 개정해야 할 것이다. 유자넷은 12월 21일(수,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30호에서 김부겸 의원실과 공동으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후 본격적인 공론화와 입법화에 나설 것이다. 끝.

□ 별첨1. 공직선거법 개정안(유권자 자유법) 1부. 끝.

※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 참여단체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YMCA,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외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52개

<별첨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1. 12. 15

발 의 자 : 김부겸□전병헌□박주선□오제세□이
윤석□송민순□조정식□김상희□김
영진□김성곤□최종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는 ‘똥은 묶고 입은 푼다’는 것이었으나,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새롭게 등장한 의사소통수단을 반영하지 못한 채 유권자들의 높아진 정치 참여 욕구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음.

대표적 독소조항인 선거법 93조 1항의 경우, 선거 180일 전부터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끊임 없이 위헌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후보자비방죄, 인터넷 실명제, 시설물 설치 금지 등 각종 규제 조항들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건전한 비판과 정책 형성 활동을 제약하고 있음.

이와 같은 규제 중심적 선거법의 문제는 지난 2007년 대선 시기의 인터넷 UCC물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과 2010년 지방선거 시기의 트위터 단속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른바 ‘선거쟁점(4대강 무상급식)’을 통한 특정 정책 과제의 단속으로 나타난 바 있음.

따라서 주권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권자의 참여를 제약하는 현행 규제 중심적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음. 무엇보다 유권자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 즉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하고 반대할 권리, 원하는 정책을 호소할 권리, 마음껏 투표를 권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를 규제해온 주요 독소 조항들을 개정하고자 함.

한편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선거일에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음. 무엇보다 생업 등으로 인해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며, 휴무가 아닌 재보궐의 경우 투표권 보장은 더욱 절실함. 이에 따라 투표시간 연장, 부재자투표소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투표를 통해 발현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대하여 참정권 보장의 폭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선거운동' 정의 규정을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 능동적, 계획적' 행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음(안 제58조제1항).

나. 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정

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음(안 제59조, 안 제82조의4제1항).

다. 인터넷 언론사에 실명제를 강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여론수렴과 공론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 침해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도록 하였음(안 제82조의6).

라. 포괄적인 시설물 규제 범위와 시기를 개정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물 설치'로 규제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규제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도록 하였음(안 제90조제1항).

마. 선거 180일 전부터 온·오프라인에서 후보자,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음(안 제93조제1항).

바. 선거 기간 연설회의 경우,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하도록 하였음(안 제101조).

사. 선거 기간 집회의 경우,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하도록 하였음(안 제103조제3항).

아.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하도록 하되,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사실상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음(안 제82조의4제2항, 안 제110조, 안 제251조).

자.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임된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건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그 요건을 완화하였음(안 제148조제2항).

차.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하였음(안 제155조제1항, 제2항, 제5항).

카. 매수및이해유도죄의 처벌범위를 엄밀히 규정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제한하였음(안 제230조제1항).

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경우 포괄성을 배제하고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한정하였음(안 제254조제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선되거나”를 “특정후보자(제49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를 당선되거나”로, “행위를”을 “직접적 구체적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과 관계기관장에 대한 청원운동

제59조제3호 중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로 한다.

제6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삭제한다.

제8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를 “언제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2조의6을 삭제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80일”을 “60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를 “선거운동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01조 중 “選舉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를 “선거운동을”로 한다.

제103조제3항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를 “선거운동을”로 한다.

제109조제2항 중 “제6호□제7호 또는 제82조의4제1항제2호 제3호에”를 “제6호에”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을 “전화를”로 한다.

제110조 본문을 삭제한다.

제148조제2항 중 “不在者投票豫想者の 數와 분포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不在者投票期間중 不在者投票豫想者가 投票를”을 읍 면 동에 거소를 둔 부재자투표예상자가 5백인을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재자투표기간 중 부재자투표예상자가 투표를”로, “투표관리관에게도 不在者投票所를 設置를 設置□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투표관리관을 지정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읍 면 동에 하나의 부재자투표소만으로 부재자투표자(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자를 말한다)의 투표를 마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읍 면 동의 부재장투표예상자가 5백인 미만이라도 지리 교통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재자투표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

회의의 의결로 투표관리관을 지정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55조제1항 본문 중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를 “9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4시에”를 “9시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를 “9시까지”로 한다.

제176조제2항 중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를 “9시”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호 중 “投票를”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투표를”로 한다.

제251조를 삭제한다.

제254조제2항 중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를 “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으로,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를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255조제2항제5호 중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文書 圖畫 등을 배부 첩부 살포 케시 상영하거나 하게 한 者, 같은 條第2項의”를 “제2항의”로 한다.

제26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58條(定義 등) ①이 法에서 選舉運動”이라 함은 <u>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u>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選舉運動으로 보지 아니한다.</p> <p>1.~4. (생략)</p> <p><신설></p> <p>② (생략)</p> <p>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2. (생략)</p> <p>3. <u>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u></p>	<p>第58條(定義 등) ①————— —————<u>특정후보자(제49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u>를 당선되거나————— —————<u>직접적 구체적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u>—————.</p> <p>1.~4. (현행과 같음)</p> <p>5. <u>정책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과 관계기관장에 대한 청원운동</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9조(선거운동기간)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u></p>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 운동) ①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2. (생략)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4.~6. (생략)

7. 문자(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이 경우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다.

②~⑥ (생략)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을 할

다. 이하 같다)을 _____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 운동) ①_____

1.□2. (현행과 같음)

<삭제>

4.~6. (현행과 같음)

<삭제>

②~⑥ (현행과 같음)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_____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
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
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계
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
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2.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3. 문자(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
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를 전송하는 방법.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
을 활용한 자동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
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언제든지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⑥ (생략)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③~⑥ (현행과 같음)

<삭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 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정보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 정보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⑦인터넷언론사는 정당 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
_____60일_____

_____선거운동을_____

_____ <후
단 삭제>

조에서 같다)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3.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第93條(脫法方法에 의한 文書 圖畫의 배부 配서 등 금지) ①누구든지 選舉日전 180日(補闕選舉 등에 있어서는 그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舉日까지 選舉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政黨(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候補者(候補者가

1.~3. (현행과 같음)

<삭제>

第93條(脫法方法에 의한 文書 圖畫의 배부 配서 등 금지) <삭제>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 하 이 條에서 같다)를 支持 추천하거나 反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政黨의 명칭 또는 候補者의 姓名을 나타내는 廣告, 人事狀, 壁報, 사진, 文書 圖畫 印刷物이나 錄音 錄畫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 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③ (생략)

第101條(他演說會 등의 금지) 누구든지 選舉期間중 選舉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한 연설 대담

②□③ (현행과 같음)

第101條(他演說會 등의 금지) —

_____선거운동을_____

또는 對談 討論會를 제외하고
는 多數人을 모이게 하여 個人
政見發表會 時局講演會 座談會
또는 討論會 기타의 演說會나
對談 討論會를 개최할 수 없다.

第103條(各種集會 등의 제한) ①

② (생략)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
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중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④⑤ (생략)

第109條(書信 電報 등에 의한 選
舉運動의 금지) ① (생략)

② 제60조의3제1항제6호·제7호
또는 제82조의4제1항제2호 제3
호에 따른 전화 또는 문자메시
지를 이용한 選舉運動은 夜間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③ (생략)

第110條(候補者 등의 誹謗禁止)

누구든지 選舉運動을 위하여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 候補者의 配偶者와 直系

_____.

第103條(各種集會 등의 제한)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선거
운동을_____

④⑤ (현행과 같음)

第109條(書信 電報 등에 의한 選
舉運動의 금지) ① (현행과 같
음)

② _____제6호
에 _____전화를_____

③ (현행과 같음)

<삭제>

尊卑屬이나 兄弟姊妹의 出生地 身分 職業 經歷 등 財産 人格 행위 所屬團體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公表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私生活을 誹謗할 수 없다. 다만, 眞實한 사실로서 公共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48條(不在者投票所의 設置) ①

(생략)

②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管轄區域안의 不在者投票豫想者의 數와 분포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不在者投票期間중 不在者投票豫想者가 投票를 마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투표관리관에게도 不在者投票所를 設置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第148條(不在者投票所의 設置)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읍 면 동에 거소를 둔 부재자투표예상자가 5백인을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재자투표기간 중 부재자투표예상자가 투표를 _____투표관리관을 지정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읍 면 동에 하나의 부재자투표소만으로 부재자투표자(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자를 말한다)의 투표를 마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읍·면 동의 부재장투표예상자가 5백인 미만이라도 지리 교통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재자투표소의 설

③~⑦ (생략)

第155條(投票時間) ①投票所는 選舉日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投票所에서 投票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選舉人에게는 番號票를 부여하여 投票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②第148條(不在者投票所의 設置)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所는 不在者投票期間중 매일 오전 10시에 열고 오후 4시에 닫는다. 이 경우 第1項 但書의 規定은 不在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

③□④ (생략)

⑤不在者投票는 選舉日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管轄區 市 郡 選舉管理委員會에 도착되어야 한다.

第176條(不在者投票의 開票) ① (생략)

②郵便投票函은 開票參觀人의

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투표관리관을 지정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⑦ (현행과 같음)

第155條(投票時間) ① _____
_____9
시에_____. _____

_____.

② _____

_____9시에_____
_____. _____
_____.

③□④ (현행과 같음)

⑤ _____9
시까지_____
_____.

第176條(不在者投票의 開票)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다) 또는 參觀人(投票參觀人·不在者投票參觀人과 開票參觀人을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에게 金錢 物品 車馬 響應 그 밖에 財産상의 이익이나 公私의 職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者

2.~5. (생략)

②~⑧ (생략)

第251條(候補者誹謗罪)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演說 放送 新聞 通信 雜誌 壁報 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公然히 사실을 摘示하여 候補者(候補자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 卑屬이나 兄弟姊妹를 誹謗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眞實한 사실로서 公共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

第254條(選舉運動期間違反罪) ① (생략)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2.~5. (현행과 같음)

②~⑧ (현행과 같음)

<삭제>

第254條(選舉運動期間違反罪)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법에 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신문 뉴스통신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55條(不正選舉運動罪)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4. (생략)

5. 第93條(脫法方法에 의한 文書 圖畫의 배부 게시 등 금지)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文書 圖畫 등을 배부 첩부 살포 게시 상영하거나 하게 한 者, 같은 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廣告 또는 出演을 하거나 하게 한 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身分證明書 文書 기타 印刷物을 發給 배부 또는 徵求하거나 하게 한 者

_____선거

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

별방문 등의 방법으로_____

_____.

第255條(不正選舉運動罪) ① (현행과 같음)

②_____

_____.

1.~4. (현행과 같음)

5. _____

_____제2항의_____

6.~8. (생 략)

③□④ (생 략)

第261條(過怠料의 賦課 徵收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3. 제8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자

④~⑧ (생 략)

6.~8.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第261條(過怠料의 賦課 徵收등)

① _____

_____.

<삭 제>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1.□2. (현행과 같음)

<삭 제>

④~⑧ (현행과 같음)